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재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이지-쇼-인트(Easy-jo-int)	2004.03.14	2017.09.05	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 품 명	이지-쇼-인트(Easy-jo-int)
나. 일반적 특성	아스팔트와 열가소성 탄성체의 결합체
다. 제품의 용도	긴급 도로 보수재(균열파손 부위 패칭)
마. 공급자 정보	
회사명	흥진산업주식회사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 151
긴급전화번호	043)534-2728

2. 유해성 · 위험성

가. 유해성 · 위험성 분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발암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 · 위험문구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80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연을 구하십시오.
 P321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 조연을 구하십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대응

저장

폐기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1
화재	1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CAS 번호	함유량(%)
1. Asphalt	8052-42-4	70 이하
2. SBS	9003-55-8	35 이상
3. Others	-	10 이하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시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고 따뜻하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할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 실시할 것.
- 라. 먹었을 때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몸체보다 낮게 눕혀 기도질식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특정한 해독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라 적절히 치료할 것.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물 분무, 포말.
부적절한 소재 : 강산화제, 방향족화합물, 염화탄화수소.
대형 화재 시 물분무 또는 포말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분해 생성물
- 열분해시 산화성 연기나 자극성 연무가 생성될 수 있음.
화재 및 폭발 위험
-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음.

- 열, 스파크, 불꽃과의 접촉은 피할 것.
- 다.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하지 않을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고압물줄기로 누출된 물질을 흘트리지 말 것.
 - 유해가스 및 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며, 바람을 등지고 설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이전에 환기를 할 것.
 - 보호복 및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막을 설치할 것.
 - 누출물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에 신고할 것.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처리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 적절한 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할 것.
 -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서늘하고 습기가 없으며,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산업안전보건법	노출 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손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색상	진한 갈색 또는 검정색
나. 냄새	타르 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어는점/녹는점	-20 ~ 180℃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288℃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228℃)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불용성)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200 ~ 1.400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300℃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연소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유해중합반응 일어나지 않음.
--------------------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방향성 물질, 염화탄화수소, 가연성 물질, 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분해 시 산화성, 자극성 연기가 생성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다. 기타 독성 정보	먼지는 자극의 원인이 됨. 높은 연무농도는 독성효과의 원인임.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정 폐기물처리업자, 합성수지 폐기물 재생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지정된 분류등급 없음
나.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지정된 분류등급 없음
다.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 행령에 의해 사업장외 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로테르담 협약 물질	해당없음
스톡홀름 협약 물질	해당없음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해당없음
EU분류정보	해당없음
미국 관리 정보	
OSHA규정(29CFR1910.119)	해당없음
CERCLA 103규정(40CFR302.4)	해당없음
EPCRA 302규정(40CFR355.30)	해당없음
EPCRA 304규정(40CFR355.40)	해당없음
EPCRA 313규정(40CFR372.65)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출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제공하는 자료,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등에서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물질자체를 완전 히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나. 최초작성일	2004년 03월 14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4회
최종 개정일자	2017년 09월 05일
라. 기타	제공된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 적 용도 등으로는 금지되므로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은 제공된 물질의 용도나 알려진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